



보도자료
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	과 장 김지수 사무관 한주철	042-481-8321 042-481-5400
	2015년 4월 2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4월 28일(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한-필리핀 특허심사 고속망 개통

- 국가 간 '특허심사 하이웨이(PPH, Patent Prosecution Highway)' 프로그램 시행 -

-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2015년 5월1일 자로 필리핀과 '특허심사 하이웨이(PPH, Patent Prosecution Highway)'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
-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, 다른 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며,
 - 해당 신청건을 빨리 심사해 줌으로써 출원인 입장에서는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고, 특허청 또한 다른 청의 심사견해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중복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- 1994년 대 필리핀 수출액이 12억 달러를 달성한 후 20년 만에 교역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, 우리 기업의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
 - 이에 동 프로그램은 필리핀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선점 및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특허청은 현재 미국, 중국, 일본 등 22개 청과 PPH를 시행 중이며, 주요 교역국인 대만과 올해 6월경 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상 특허청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.

* 한국의 PPH 시행청('15.4월 기준): 일본, 미국, 중국, 유럽특허청, 오스트리아, 덴마크, 영국, 캐나다, 러시아, 핀란드, 스페인, 독일, 멕시코, 싱가포르, 헝가리, 이스라엘, 호주, 스웨덴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아이슬란드, 노르딕 특허기구

□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이번 한-필리핀 간 PPH 시행을 계기로,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조기에 특허로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, 앞으로 특허청은 PPH 신청건의 심사 품질 및 신청절차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PPH 시행청, 신청절차 관련 특허청 홈페이지: <http://www.kipo.go.kr>

<붙임> PPH 종류 및 개념

1 출원 형태별 종류 및 개념

- (PPH)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, 다른 특허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
- (PPH Mottainai) PPH의 한 종류이며, 출원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심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PPH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
- (PCT-PPH) PCT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지정국에 진입할 경우, 해당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



2 대상 특허청별 종류 및 개념

- (양자간 PPH) 두 개 특허청간에 PPH/PCT-PPH 제도가 시행되는 양자간 프로그램
 - * 양자간 PPH 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다자간 PPH인 IP5·Global PPH가 시행된 경우, 다자간 PPH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
- (IP5 PPH) IP5 간에 PPH-Mottainai/PCT-PPH가 시행되는 다자간 프로그램 ('14.1.6. 시행)
- (Global PPH) 19개 특허청*간에 PPH-Mottainai/PCT-PPH 제도가 시행되는 다자간 프로그램('14.1.6. 시행, 싱가포르·오스트리아는 '14.11.6. 시행)

- * 한국, 일본, 미국, 캐나다, 핀란드, 러시아, 영국, 노르웨이, 스페인, 노르딕 특허기구, 덴마크, 스웨덴, 포르투갈, 아이슬란드, 이스라엘, 호주, 헝가리, 싱가포르, 오스트리아

<IP5 · Global PPH 시행청>

